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5. 27 선고 2020가단7505 판결 [매매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5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67,94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4. 9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0년 제205호 공정증서(복사기 매매대금 변제약정) 시효 연장.

판사이형주